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20

제출년월일 : 1996. 1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심의회장 조정

- 현행 심의회장인 '도지사' 를 '행정부지사' 로 함

○ 회장 조정으로 발생한 당연직위원 1인은 '보건환경국장' 을 위촉함

- 당연직위원(현재) : 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
- 당연직위원(조정) : 기획관리실장, 보건환경국장, 공업경제국장, 건설교통국장

□ 근거법령

○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 (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)

○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제12조 (도심의회)

□ 기타참고자료 (붙임)

1.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.
2. 신·구조문대조표 1부.
3. 관계법령 발췌문 1부.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 본문중 '회장은 도지사가 된다' 를 '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' 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'행정부지사, 기획관리실장' 을 '기획관리실장, 보건환경국장' 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'행정부지사가' 를 '기획관리실장이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